

“만연방지 중점조치”지정에 따른 오키나와현 대처방침

【기간】4월 12일(월)~5월11일(화)5일(수)

신규 양성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4월 9일 정부로부터 “만연방지 중점조치” 적용 대상으로 오키나와현이 지정되었으며, 4월 23일에는 만연방지 중점조치의 실시 기간을 “2021년 4월 12일부터 2021년 5월 11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오키나와현에서는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5월 1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며 자탄정, 니시하라정, 요나바루정, 하에바루정 및 야에세정의 감염상황을 고려해, 만연방지 중점조치구역에 5정(町)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키나와현은 가장 높은 경계레벨인 제4단계에 있으며, 중점조치를 실시하는 10개 시(市)와 5개 정을 포함해, 현 내 모든 시정촌에 감염방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의 대처방침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정촌 및 관련 단체는 감염확산방지대책 및 이를 현민 여러분께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연방지 중점조치” 지정에 따른 대책 ※연장결정
4월 12일(월)~5월 11일(화)5일(수)

현민에 대한 요청(현 내 전역)

【특조법 제24조 9항 : 협력요청】

【특조법 제31조의 6 제2항: 중점조치로서 요청】

○ 불필요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할 것(동법 제 24조 제9항)

의료기관 통원, 식료품·의약품·생활필수품의 구매, 필요에 의한 출근, 심신의 안정과 운동·산책 등 생활과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삼가도록 요청합니다.

○ 혼잡한 장소와 시간을 피해 행동할 것(동법 24조 제9항)

생활과 건강의 유지를 위해 외출을 한 경우에도 혼잡을 피해 주십시오.

○ 단축이 요청된 영업시간 이후, 음식점 등에 함부로 출입하지 않을 것(동법 제24조 제9항·동법 제31조의 6 제2항)

오키나와현 전역의 음식점 등에 20시까지의 영업시간단축을 요청중입니다.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등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요청드립니다.

○ 타 현과의 불필요한 왕래는 자제할 것(동법 제24조 제9항)

특히 긴급사태선언구역 등의 감염확산지역과의 왕래는 반드시 자제해 주십시오.
출장 등으로 왕래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지에서의 회식을 피하며 오키나와에 돌아온 뒤 1주일 동안은 건강관찰기간으로 여겨, 가족 이외의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것은 삼가주십시오.

○ 이도(離島)와의 불필요한 왕래는 자제할 것(동법 제24조 제9항)

현민에 대한 요청(현 내 전역)

【특조법 제24조 9항 : 협력요청】

【특조법 제31조의 6 제2항: 중점조치로서 요청】

○환영회, 계모임, 비치 파티 등 식사로 이어지는 행사 등은 자제할 것

(동법 제 24조 제9항 · 동법 제31조의 6 제2항)

회식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 바베큐에서의 감염사례도 확인 된 바 있으므로, 이 기간은 회식으로 이어지는 이벤트의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회식은 함께 사는 가족과 소수 인원으로 짧은 시간동안 실시하며, 감염방지대책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 음식점은 이용을 자제할 것

(동법 제24조 제9항)

○음식점에서 요구하는 감염방지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동법 제24조 제9항)

체온 검사, 마스크 착용, 간격을 둔 자리 배치 등 점포가 요구하는 감염방지대책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방문자에게 드리는 부탁(현 내 전역)

정부의 기본적 대처방침에 따라 불필요한 도도부현간의 이동, 특히 긴급사태선언구역 등 감염확산지역과의 왕래는 반드시 피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현 차원에서 변이주의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기에, 긴급사태선언구역 및 만연방지중점조치구역에서 귀성하거나 오키나와현에 방문하는 것은 삼가주시도록 요청합니다.

필요에 의해 오키나와에 오시는 경우에는 현 입역 전에 PCR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아 주십시오. 또한, 방문 전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분은 나하공항 도착시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NAPP”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오키나와에 도착한 뒤 현민과의 회식은 삼가 주십시오.

지정지역 음식점에의 요청 (나하시, 우라소에시, 기노완시, 오키나와시, 우루마시, 이토만시, 도미구스쿠시, 난조시, 나고시, 미야코지마시, 자탄정, 니시하라정, 요나바루정, 하에바루정, 야에세정)

【영업시간단축 협력요청】 (특조법 제31조의 6 제1항 · 특조법 제24조 제 9항)

기간	2021년 4월 12일(월)(※미야코지마시는 4월 24일, <u>5정(자탄정, 니시하라정, 요나바루정, 야에세정)은 5월 1일</u>)부터 2021년 5월 <u>11일(화)</u>
대상시설	음식점 및 음식을 수반하는 유흥시설 등※
요청내용	<p>(특조법 제31조의 6 제1항에 따른 것 : 명령,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시간단축영업(포장 · 배달을 제외) (주류 제공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자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퇴장을 포함) ○아크릴 판 설치(<u>또는 좌석 간격을 1m 이상 확보</u>) 등 ○위 내용 외에, 특조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종업원에게 검사 권장, 입장자 정리 유도, 발열 등 유증상자의 입장제한, 손 소독설비 설치, 사업소의 소독, 시설 환기) ○<u>가라오케 시설 이용 자제(가라오케 시설이 있는 음식점 점포)</u> <p>(특조법 제24조 제9항에 따른 것 : 협력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이 실시하는 감염방지 대책추진 순회사업에 협력 ○환기 철저, 이용자 체온 검사,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 ○<u>식사 시 이외에 마스크 착용에 협력하지 않는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릴 것</u>

※ 유흥시설등이란, 카바레, 나이트클럽, 라이브하우스, 스낵, 댄스홀, 펍 등으로 식품위생법상의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지정지역이외의 현 내 모든 음식점에의 요청

【영업시간단축 협력요청】(특조법 제24조 제9항)

기간	2021년 4월 12일(월)부터 2021년 5월11일(화)
대상시설	음식점 및 음식을 수반하는 유흥시설 등※
요청내용	<p>(특조법 제24조 제9항에 따른 것 : 협력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시간단축영업(포장·배달을 제외) (주류 제공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현이 실시하는 감염방지 대책추진 순회사업에 협력 ○이용자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퇴장을 포함) ○아크릴판 설치(또는 좌석 간격을 1m 이상 확보) 등 ○위 내용 외에, 특조법시행령 제5조의 5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종업원에게 검사 권장, 입장자의 정리유도, 발열 등 유증상자의 입장금지, 손 소독설비 설치, 사업소 소독, 시설 환기) ○환기 철저, 이용자 체온 검사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 ○가라오케 시설 이용 자제(가라오케 시설이 있는 음식점 점포) ○식사 시 이외에 마스크 착용에 협력하지 않는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릴 것

※ 유흥시설등이란, 카바레, 나이트클럽, 라이브하우스, 스넥, 댄스홀, 펍 등으로 식품위생법상의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행사 개최에 대한 요청(현 내 전역) (특조법 제24조 제9항)

- 주최자에게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동시에, 정부의 접촉확인 앱(COCOA), 현이 추천, 장려하는 LINE 앱을 이용한 농후접촉자 통지시스템(RICCA)의 도입 또는 명부작성 등의 추적 대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
- 전국적인 이동을 수반하는 행사 또는 참가자가 1,000명을 넘는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그 행사의 개최요건등에 대해서 현과 사전에 상담할 것
- 전국적인 감염확산 또는 행사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정부가 업종별 가이드라인의 재검토나 수용률요건, 최대수용인원의 검토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응할 것
- 행사 개최의 요건은 아래 내용대로(적절한 감염방지대책이 강구될 것이 전제)

기간	수용률		최대수용인원
4월12일 ~ 5월11일	큰 소리를 내는 합성·성원 등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한 것 · 클래식 음악 콘서트, 연극 등, 무용, 전통예능, 예능·연예, 공연·의식, 전시회 등 · 음식을 수반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2)	큰 소리를 내는 합성·성원 등이 상정되는 것 록, 대중음악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공연경기, 공연, 라이브하우스·나이트클럽 이벤트 등	5,000명 이하
	100% 이내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적절한 간격)	50%(※1) 이내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충분한 간격)	

※1 : 다른 그룹 사이에 좌석을 하나 비우면, 같은 그룹(5명 이내로 한정)내에서는 좌석 간격을 두지 않아도 좋다. 즉, 수용률은 50%를 넘는 경우가 있다.

※2 : "행사 중 식사를 수반하는 프로그램"은 필요한 감염방지책이 보장된 상태이면서 행사중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에 한해, "큰 소리를 내는 합성·성원 등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영업시간은 5시부터 20시까지로 하도록 요청

경제계에서의 요청(현 내 전역)

(특조법 제24조 제9항)

- 자사 종업원에게 단축이 요청된 영업시간인 20시 이후, 음식점 등에 함부로 출입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것. 특히 영업시간단축에 따르지 않는 점포를 이용하지 않도록 요구할 것.
- 직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해, 휴식시간도 포함해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할 것
- 종업원에게 연수 시의 친목 모임, 환영회 계모임, 비치 파티 등을 피할 것을 요구할 것
- “출근자 수의 7할 삭감”을 목표하는 것을 포함해, 재택근무를 보다 추진할 것. 출근이 필요한 직장이라도 로테이션 근무, 시차근무, 자동차 통근 등의 방침을 추진할 것
- 관광관련사업자는, 방문자에게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손 소독, 3밀(밀폐·밀집·밀접)의 회피 등 “새로운 생활양식” 및 “새로운 여행 에티켓”을 철저히 지키도록 부탁할 것
-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것

학교관계에서의 요청(현 내 전역)

(특조법 제24조 제9항)

- 어린이와 학생이 가정에서 건강관찰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몸이 안 좋을 때는 등교시키지 않을 것
- 부활동, 과외활동, 학생 기숙사에서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지킬 것
- 부활동, 과외활동에 있어서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제한하거나 자제할 것
(기간 중, 현 내외에서 연습시합이나 합숙 등에 임해서는 안된다 등)
- 현 교육위원회 등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것

대중교통기관에서의 요청(현 내 전역)

- 대중교통기관에 주요 터미널에서 체온검사를 실시하는 것 등을 의뢰

시설에의 요청(현 내 전역)

○박물관, 미술관과 운동시설 등, 현립 공공시설은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지키면서 운영을 계속하며 영업시간은 저녁 8시까지로 함. 시정촌립 공공시설 또한 현과 같은 대응을 할 것을 요청함

○노상 · 공원 등에서 집단으로 술을 마시는 등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행동을 피하기 위해 시설관리자가 주의환기를 행하도록 의뢰함

○기타 음식점 이외의 특조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으로 규정하는 운동시설, 유기장, 영화관 등의 시설은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철저히 할 것과 시설에 사람이 모여 식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입장자의 정리유도와 오후 8시까지의 영업시간단축등에 대해 요청함

특히, 대규모 집객시설(극장 · 영화관 · 백화점 등)에 시설내외로 혼잡이 생기지 않도록 "입장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함

시정촌과 연계한 방침을 실시

·방재무선, 홍보차량등을 활용해 지역주민에게 감염방지대책을 널리 알리며, 지자체의 협력을 요청함

·음식점 등의 순회에 협력(감염방지대책 요청, 영업시간단축요청 협력 부탁)

·각종 시설, 공원 등에서 관리자로서의 노력(노상, 공원 등에서의 주의환기를 포함)

·골든 위크 중의 의료체제(불필요한 구급진찰 억제 호소, 영업하는 진료소 정보 등)를 알림